



문서번호: 23-02-노동-01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용우)
제 목: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발표
전송일자: 2023. 2. 15.(수)
전송매수: 공동선언 및 사진 포함 총 8매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을 둘러싼 치열한 사회적 논쟁과 국회 입법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사회적 과제이자 노동시민사회의 숙원 과제였고, 짧게는 작년 하반기 분출된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투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불충분한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고, 그 속도도 미진한 상황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용우)와 일본 오사카노동자변호단(대표간사 히라카타 가오루)은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제24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를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4. 양국이 공동선언 초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지난 2023. 2. 11.(토)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24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세미나 당일, 양국의 노동법률가들이 모여 이번 공동선언을 낭독하고, 국회가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로 마무리하였습니다.

5. 또한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이번 공동선언을 주일한국대사관에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6. 양국 법률가 단체가 발표한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리며, 공동선언 전문은 아래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소개>

1975년, ‘총평’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현재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전신인 ‘오사카지방노동조합평의회변호단’을 결성하였습니다. 1989년 총평 해산 후, 1992년에 명칭을 현재의 ‘오사카노동자변호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호단 단원은 오사카를 중심으로 현재 약 140명이며, 찬조단체는 약 80단체입니다. 기관지로 La-La통신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는 한국 ‘민변 노동위원회’와 상호 교류를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 ※ 별첨1: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한국어
- ※ 별첨2: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일본어
- ※ 별첨3: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발표 사진 및 ‘제24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아사히신문 오사카판 2023 .2. 12.자 보도사진

2023. 2. 15.(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용 우



[별첨1]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2022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가 다시금 사회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맞이한 파업의 현실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가령 2022년 당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헌청지회 노동자들이, 5년간 삭감된 임금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개시하자, 원사업주인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부 5인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역시 2022년 하이트진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원사업주인 하이트진로에게 운송료 인상을 주장하며 파업을 개시하자, 하이트진로는 파업에 참여한 주요 조합원들에게 2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33조를 통해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언한 국가입니다.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이 수십억,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한·일 양국의 법률가들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우리 한·일 양국의 법률가들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노동조합법 제2조가 개정되어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정의를 개정하여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등 노동3권의 행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개정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원사업주에 대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사업주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여 정리해고를 비롯한 구조조정, 권리분쟁 등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3조의 개정 역시 필수적입니다. 설령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이뤄지는 경우라도, 단체행동권의 실효적 보장과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이외에 개인 조합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부진정연대 책임의 원칙 역시 상당 부분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 영업손실, 고정비용 등의 가정적인 손해에 대한 청구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감면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위, 배상의무자의 재정상태,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손해배상의 규모가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작금의 현실과 같이 사용자의 노동조합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 범위, 내용 등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다수의 노동조합법 제2조 또는 제3조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조차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ILO 핵심 협약 비준국인 만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수준의 노동3권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의 마지막 외침, 절박한 파업에 대해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형해화시키는 작금의 현실은 국제규범의 위반을 논하기 앞서 비인간적이고,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한·일 양국의 법률가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이용우
오사카노동자변호단 대표간사 변호사 히라카타 가오루

[별첨2]

韓国の 労組法 第 2 条 第 3 条の 改正を 求める 韓日 法律家 団体 共同宣言

2022 年以降、韓国社会では黄色い封筒法制定の議論が再び社会的な話題になりました。この間、韓国社会で労働者が向き合うことになったストライキの現実、まさに絶望的なものでした。例えば 2022 年当時、金属労組巨済（こじえ）統営（とんよん）高城（こそん）造船下請け支会の労働者らが、5 年間に削減された賃金の正常化を要求してストライキを開始すると、元事業主である大宇（てう）造船海洋は、ストライキに参加した労働組合の幹部 5 人に 470 億ウォンの損害賠償請求訴訟で対応しました。同じく 2022 年にハイト真露（じんろ）の事業場で働く貨物連帯の組合員らが元事業主であるハイト真露に運送料の引き上げを主張してストライキを開始すると、ハイト真露はストライキに参加した主要組合員らに 27 億ウォンの損害賠償請求訴訟で対応しました。大韓民国は、憲法第 33 条を通じて団体行動権をはじめとする労働三権を国民の基本権として宣言した国家です。労働者らが自らの労働条件改善のために、憲法上の基本権である団体行動権を行使したことが、数十億・数百億ウォン台の損害賠償請求訴訟の対象になる昨今の現実に、私たち韓日両国の法律家たちは深い憂慮と遺憾の意を表します。

私たち韓日両国の法律家は、国会で黄色い封筒法、すなわち労働組合法第 2 条および第 3 条改正案に対する迅速な処理がなされることを要求します。まず、労働組合法第 2 条が改正され、労働者らの労働三権を実質的に保障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労働組合法上の労働者の定義を改正し、特殊雇用職の労働者らに対して労働者性を認めるなど労働三権の行使を保障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労働組合法上の使用者概念を改正し、間接雇用労働者らに元事業主に対する団体交渉権と団体行動権を保障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間接雇用労働者らが労働三権を実質的に享有するためには、労働条件を実質的に支配・決定できる元事業主の使用者性が認めら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最後に、労働組合法上の労働争議の概念を拡大し、整理解雇をはじめとする構造調整・権利紛争など労働者の社会・経済的地位と関連するすべての事案に対して、団体交渉権と団体行動権を行使で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さらに、労働組合法第3条の改正も必須です。仮に争議行為に対して損害賠償請求がなされる場合であっても、団体行動権の実効的保障と労働組合の存立のために、損害賠償請求に対する合理的な規制がな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具体的には、▲損害賠償請求の相手方を規制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労働組合以外に個人組合員に対する無差別的な請求は原則的に禁止されなければならず、不真正連帯責任の原則も相当部分制限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損害賠償請求の範囲を規制する必要があります。単純ストライキ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は禁止されるべきです。また、営業損失や固定費用などの仮定的な損害に対する請求も禁止されるべきです。▲損害賠償請求に対する減免請求権が認めら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争議行為の原因と経緯、賠償義務者の財政状態、被害拡大を防止するための使用者の努力の程度などを評価し、損害賠償の規模が合理的に制限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争議行為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が、昨今の現実のように、使用者による労働組合に対する弾圧の手段に悪用さ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は、損害賠償請求の相手方・範囲・内容などに対する実効的な規制が必要で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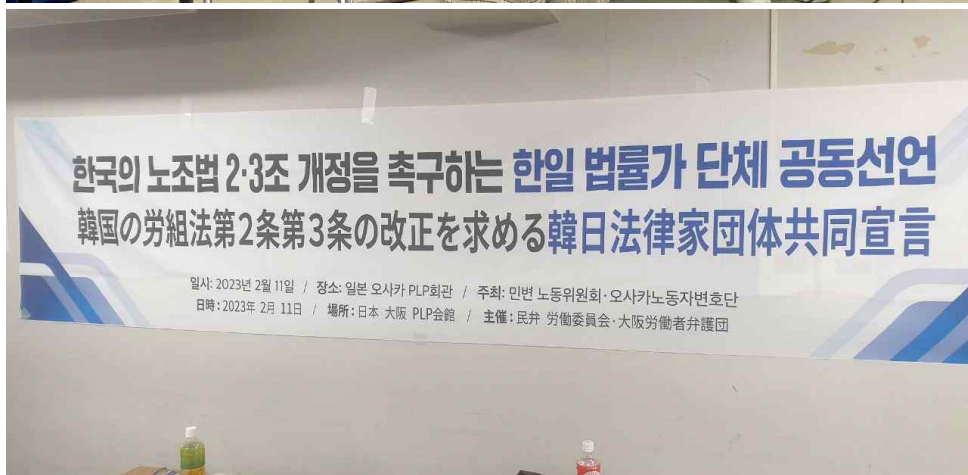
2022年、大韓民国国会では、労働組合法第2条・第3条に対する多くの改正案が発議されましたが、いまだ具体的な立法はなされていません。国会所管の常任委員会である環境労働委員会でさえ、労働組合法の改正案が十分に議論されていないのです。大韓民国はILO核心協約の批准国なので、国際規範に符合する水準の労働三権の保障が必要です。労働者の最後の叫び、切迫したストライキに対して数十億・数百億ウォンの損害賠償を請求し、憲法上の基本権である団体行動権を形骸化させる昨今の現実、国際規範の違反を論じる以前に、非人間的で許しがたいことです。私たち韓日両国の法律家は、韓国の労働者の労働三権保障のために、韓国国会として労働組合法第2条および第3条の改正案を迅速に処理することを要求します。

以上

2023年 2月 11日

韓国 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 労働委員会 委員長 弁護士 李庸宇
大阪労働者弁護団 代表幹事 弁護士 平方かおる

[별첨3]





朝日新聞
DIGITAL

日韓弁護士が議論 スト参加者への賠償請求「許しがたい」

大滝哲彰 2023年2月12日 10時30分



交流会で議論する日韓の弁護士たち©2023年2月11日午後2時32分、大阪市北区、大滝哲彰撮影



日韓の弁護士51人による交流会が11日、大阪市北区のPLP会館で開かれ、労働者の生活権や人権擁護について議論した。

125人が所属する「大阪労働者弁護団」と韓国の「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 労働委員会」は、1999年から交流している。今回は日本から25人、韓国から26人の弁護士が参加した。

議論の中心になったのは、韓国で広がる「黄色い封筒法」の制定運動。韓国ではストライキをした労働者に対し、使用者側が多額の損害賠償を請求するケースが多いという。これを見直そうという運動が起きており、かつての韓国の月給封筒を象徴して「黄色い封筒」と名付けられた。

交流会では「ストライキに対して損害賠償を請求し、憲法上の基本権である団体行動権を形骸化させる昨今の現実とは、非人間的で許しがたい」とする共同宣言が発表された。

日本側は、裁判で「解雇無効」となっても職場に戻りたくない場合、金銭で解決する仕組みを政府が検討していることを報告した。大阪労働者弁護団の代表幹事を務める平方かおる弁護士は「日韓双方の労働界が抱える共通の課題を共有できた」と話した。（大滝哲彰）

有料会員になると会員限定の有料記事もお読みいただけます。

わずか55円（1カ月間無料）

※無料期間中に解約した場合、料金はかかりません

期間中何度でも

朝日新聞 モール **15% OFF** クーポンプレゼント!

朝日新聞 DIGITAL

※web注文限定・一部除外品あり

朝日新聞デジタルに掲載の記事・写真の無断転載を禁じます。すべての内容は日本の著作権法並びに国際条約により保護されています。
Copyright © The Asahi Shimbun Company. All rights reserved. No reproduction or republication without written permission.